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37
----------	-----

2024. 11. 26.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2024. 11. 4. 강남구청장(총무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11. 26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행정국장)

로봇친화도시 강남, 행복문화복합타운 조성 등 민선8기 역점 사업의 지속적·종합적 추진동력 확보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중앙정부·서울특별시 및 유관기관 간 연계·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인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(미래전략기획단) 존속기한 2년 연장

- 1) 기존 2024. 12. 31. → 개정 2026. 12. 31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(2) 입법예고(2024. 9. 20.~2024. 9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상민)

가. 조문 내용별 검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에서, ‘행정기구의 설치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정하고’ ,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기
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)제1항에서, ‘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
는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·독자성·계속성 등을
고려하여야 하며’ ,
- 같은 규정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에서, ‘긴급히 발생하는

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

-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며,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,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며’ ,
- 같은 규정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에서, ‘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…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’ 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한편,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송부한 「지방자치단체 자체조직 분석·진단 매뉴얼」(행정안전부 ‘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’)에 따라 조직진단을 실시하고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조(한시기구의 운영)제1항에 따른 ‘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조직진단을 하여야 한다’ 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조(한시기구의 운영)제1항에서, ‘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종합의견

- 부칙 제2조(한시기구)는,
 - ‘미래전략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’ 고 개정하여 기존의 존속기한에서 2년 연장하려는 것이며, 이는 위와 같은 규정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제5항에서 ‘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… 1회에 한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에 위 존속기한 연장은 그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,
-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사업인 공공청사 건립, 로봇친화도시, 동부간선도로 도로지하화 사업, 도시공간 발전 및 개선사업 및 광역도로망 확충 및 국토부의 GTX 추진 등 국토부나 서울시의 국책사업을 지원 및 소통하는 역할의 비중이 커 보이며, 각 사업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사업의 열거로 한시적 행정수요나 긴급히 발생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.
- 다만, 미래전략기획단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된 사항으로 공공기관과 전문가 등과 대외적인 소통을 위해서도 전담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.
- 한시기구인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것으로, 그 법적 요건에는 부합되어 보이나, 위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과 상당한 업무량의 존재 여부 등 부득이한 경우의 존속기한 연장인지와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시기구 존속의 구체적 필요성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종합적 논의와 고찰이 필요해 보임.
-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(2024. 9. 20. ~ 2024. 9. 30.실시)을 단축하였는데, 원칙은 「행정절차법」 제43조¹⁾ 및 「강남

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 규정에 따라 20일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입법예고 단축사유 기재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및 구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구민의 관점에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1) 제43조(예고기간)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(자치법규는 20일) 이상으로 한다.

참고 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5조 (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1.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·독자성·계속성
 2.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
 3.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
 4. 주민편의,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
 5. 통솔범위,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
 6. 사무의 위탁가능성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·지방공단·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·과·담당관을 둘 수 없다.

제6조 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

-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
- ② 실·본부[본부는 특별시·광역시·도나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한한다]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.
-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(국장은 제외한다)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,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.
-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[시·도는 5급 4명 이상,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는 6급 4명 이상 포함]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.
 1. 국의 소관 업무(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)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
 2.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-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(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,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)의

지휘·감독 하에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·보좌기관인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실·국 및 과·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·국은 본부·단·부로, 과·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·국 또는 과·담당관으로 본다.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
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21조(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)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(장과 보조·보좌기관을 포함한다)의 직급이 시·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, 시·군·구에서는 5급 이상(제13조제1항에 따라 실·국을 둘 수 있는 시·군·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)인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제2조(한시기구의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3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11. 4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총무과

1. 제안이유

로봇친화도시 강남, 행복문화복합타운 조성 등 민선8기 역점 사업의 지속적·종합적 추진동력 확보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중앙정부·서울특별시 및 유관기관 간 연계·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인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(미래전략기획단) 존속기한 2년 연장

1) 기존 2024. 12. 31. → 개정 2026. 12. 31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(2) 입법예고(2024. 9. 20.~2024. 9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0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
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칙 제1조(시행일) (생략) 제2조(한시기구) 제11조2에 따라 설치되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존 속기한은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 제2조(한시기구)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

4. 작성자

- 총무과 행정7급 박준석(02-3423-5172)